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19013호, 2022. 10. 18)의 2023년 4월 19일 시행되는 조항의 세부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으로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를 5년 이상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배출규제해역 진출·입 시 기관일지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원활한 법 집행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 비치의무 위반 시 선박소유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 신설(현행 별표 19 개정)
- 나.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검증확인서를 5년 이상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현행 별표 19 개정)
- 다. 배출규제해역 진입·진출 시 디젤기관의 운전상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선박소유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 신설(현행 별표 19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9 제2호의 사목부터 폐목을 아목부터 허목으로 하고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법 제30의2조제4항에 따른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선박에 갖추두지 않은 경우	법 제132조 제4항제3호의2	50
--	------------------	----

별표 19 제2호 처목(종전의 저목) 중 “선박에”를 “5년 이상 선박에”로 하고, 같은 목 과태료 금액란의 “30”을 “50”으로 하며 같은 호 고목부터 주목을 노목부터 추목으로 하고 고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고. 법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2조 제4항제6호의1 3	50
-------------------------------------	-----------------------	----

부 칙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